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

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

2023.03



1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(총괄표)

| 평가대상 | 입학 전형 계열 | 21-1 | | | 계열 및 교과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입학 모집요강 | - H 등 H | | 인문·사회 | | 과학 | | | | | | | | |
| | | | 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| | | 국 어 | 사 회 | 모 단 단 | 수학 | 물리 | 화학 | 생 명 과 학 | 지구과학 | 영 어 | 기 타 | 교과 외 |
| 면접ㆍ 구술고사 | 학생부 교과 전형 | 인문 사회 |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인성 |
| | 수능위주 전형 | 인문 사회 |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면접 |
| 실기고사 | 실기위주 | 예체능 계열 |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실기 100% |

^{*} 교과 외: 면접내규에 의한 인성면접으로 지원동기, 장래비전, 전공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

Ⅱ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| 구분 | 판단기준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|--|--|--|--|
| | 항목 | 세부내용 | 이행 점검 | | | | | | |
| | 1.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|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(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) | 0 | | | | | | |
| 대학별고사 | |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| 해당없음 | | | | | | |
| 시행 관련 이행 사항 | 2.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| ③ 문항 제출 양식(문항카드) 작성의 충실성 | 해당없음 | | | | | | |
| 점검 | |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| 해당없음 | | | | | | |
| | 3.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|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| 0 | | | | | | |
| | |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| 0 | | | | | | |

1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

- 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15.03.25.'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운영규정' 제정 및 시행

2.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
| 구분 | | 소속 및 직위 | 성명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위원장(1인) | | 교무처장 | 박○○ |
| | | 신학대학원장 | 황○○ |
| | | 신학과장 | 박○○ |
| 이의(6이) | 내부(5인) | 사회복지상담학과장 | 박○○ |
| 위원(6인) | | 음악학과장 | 박○○ |
| | |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| 오00 |
| | 외부(1인) | 벌○고등학교 교목, 미션인성부장 | 김○○ |

3.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

1)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

| 모집시기 | 구분 | 세부일정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면접위원 등 선정 | 2022.10.17 |
| 수 시 | 면접시간 및 장소 안내 - 홈페이지 공지, 면접대상자 문자발송 | 2022.10.14, 20 |
| | 면접위원 및 진행위원 사전 교육 | 2022.10.20 |
| | 면접고사 실시 | 2022.10.21 |
| | 면접위원 등 선정 | 2023.01.05 |
| 정 시 | 면접시간 및 장소 안내 - 홈페이지 공지, 면접대상자 문자발송 | 2023.01.05, 09 |
| | 면접위원 및 진행위원 사전 교육 | 2023.01.09 |
| | 면접고사 실시 | 2023.01.10 |
| 평 가 |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- 외부위원 위촉 | 2023.03.06 |
| |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| 2023.03.09 |

2)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

| 대학입학전형 | | 대학입학전형 | | 대학입학전형 | 선행학습 |
|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대학별고사 | | 자체영향평가 | | 선행학습 | 영향평가 |
| 모집시기별 | 1 | 위원회 구성 | _ | 영향평가 | 결과보고서 |
| 진행 (면접) | | | \Rightarrow | | 홈페이지에 |
| | | | | | 공개 |
| 9월~익년 2월 | | 3월 중 | | 3월 중 | 3월 31일 이전 |

Ⅲ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

- 1. 인성면접인 관계로 각 학과별 면접문항 설계 시 면접항목에 따라 지원한 동기 및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성, 소명감, 학업계획, 전공분야 이해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묻거나,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면접문항을 점검
- 2. 전년도 면접문항에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수험생의 면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

IV.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1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전형방법

| 모집 시기 | | 전형 | 전형방법(명목상 반영비율)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시 | 학생부교과 | 일반학생 목회자추천자 국가보훈대상자 | 면접(50%) +학생부(50%) | |
| | 실기/실적 | 일반학생 | 실기(100%) | 영향평가 대상제외 |
| | 수능위주 | 일반학생 목회자추천자 | 면접(20%) +수능(30%)+학생부(50%) | |
| 정시 |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목회자추천자 | | 면접(50%) +학생부(50%) | |
| | 실기/실적 | 일반학생 | 실기(100%) | 영향평가 대상제외 |

2. 면접 형태

- 1) 면접위원 2~3명이 수험생 개별 심층 면접
- 2)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과별로 면접항목에 따른 면접문항을 면접위원들에게 안내하고 그에 따라 면접 진행

3. 학과별 면접 문항

| 면접항목 | | 면접문항 예시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TI -11 -1 -1 | 본교의 교육이념 과 소명감 | - 일반대학과 신학대학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? - 호남신학대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는가? - 장래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? | | | | |
| 전체학과 공통사항 | 대학, 학과 지원 동기 | - 해당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? - 본인의 인성 및 적성이 지원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? - 입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? -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? - 학교에 입학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? | | | | |

| 신학과 | 목회사명 감 및 성경지식 | -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? -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? - 교회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? -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? -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?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봉사와 섬김의 사명감 | - 사회복지와 상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? -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? |
| 사회복지 상담학과 | 신앙과 상담의 이해도 | 본인의 신앙생활은 상,중,하로 표현하면? 그 이유는?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? 그 이유는?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? |

4. 문항 분석 결과

- 면접항목과 문항을 분석한 결과 수험생의 인성에 대한 평가로 지원동기, 장래의 비전, 전공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하여 적성과 흥미, 더불어 진로를 파악하는 것으로 선행학습 과 관련이 없음

V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1. 2024학년도 전형별 전형방법

| 모집 시기 | | 전형 | 전형방법(명목상 반영비율)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시 | 학생부교과 | 일반학생 목회자추천자 평생학습자 국가보훈대상자 | 면접(50%) +학생부(50%) | |
| | 실기/실적 | 일반학생 | 실기(100%) | 영향평가 대상제외 |
| | 수능위주 | 일반학생 목회자추천자 | 면접(20%)+수능(30%)+학생부(50%) | |
| 정시 | 일반학생 학생부교과 평생학습자 목회자추천자 | | 면접(50%) +학생부(50%) | |
| | 실기/실적 | 일반학생 | 실기(100%) | 영향평가 대상제외 |

2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- 1) 2023학년도 입시에 준하여 2024학년도에서도 면접형태와 문항을 점검하여 인성면접 위주의 면접이 되도록 노력.
- 2) 면접진행시 면접위원에게 선행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안내 등 지속적으로 관리.
- 3)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 선행학습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시행.

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 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"자체영향평가"란 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·인성검사를 말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·분석·영향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특별법 제 16조 3호에 따라 자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 (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-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외부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(고교 교육과정 전문가, 현지 고교 교사 등)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영향평가의 진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 - 2.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 - 4.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-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4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,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(수당 등 지급)

-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)

-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 (결과의 공시)

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제8조 (기타)

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